

우수체육지도자(코치) 선발 및 지원금 지급규정

제정 2016. 4. 1
경상북도 승인 2016. 4. 27
개정 2016. 12. 23
개정 2018. 12. 24
경상북도 승인 2019. 2. 25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우수체육지도자의 선발 및 지원금 지급과 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원) 우수체육지도자의 지원은 본회 예산에 책정된 금액과 특별 협조금 및 후원금이 있을시 이를 재원으로 한다.

제3조(대상자선발) 우수체육지도자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은 회원종목 단체장의 추천에 의거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. 단, 선발인원은 본회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중도교체 및 수시임용은 필요에 따라 사무처장이 결정한다.<개정 '16.12.23>

제4조(심사위원회) 심사위원회는 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맡는다.

제5조(추천기준) 우수체육지도자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추천기준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격과 품행이 타에 모범이 되는 자.

1. 국가대표 선수를 육성지도한 실적을 가진 자
2.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및 팀을 지도·육성한 실적을 가진 자
3. 전국규모대회에 본도 대표선수로 출전하여 입상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한 실적을 가진 자
4. 국가대표선수 및 도대표 선수로 출전 경험이 있는 자
5. 특별히 경기력향상을 위하여 타시·도로부터 초빙된 체육 지도자
6. 코치 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자

단, 이상의 각 항에 해당하는 지도자는 개인경기종목을 우선한다.

제6조(구비서류) 우수체육지도자 지원대상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자필이력서 1통 <개정 '00.00.00>
2. 주민등록등본 1통 <개정 '00.00.00>
3. <삭제 '00.00.00>
4. 경기지도실적증명서 1통
5. 지도자자격증명서 1통
6. 서약서 1통
7. 월 정액보조내역(소속 단체장 발행) 1통

제7조(지원금지급 및 등급구분기준)

1. 우수체육지도자 지원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A등급 : 월 300만원 ~ 350만원

B등급 : 월 200만원 ~ 300만원

C등급 : 월 200만원 이하

2.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) 신규코치

- A급 : ① 국가대표 선수 경력을 가진 자
- ② 본도대표 선수 출신으로 전국체전에 3회이상 우승한 자
- ③ 전국체전 및 중요한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승지도 실적이 있는 자
- B급 : ① 본도대표 선수 출신으로 전국체전 및 중요한 전국규모 대회에서 3회 이상 2, 3위에 입상한 자(2003.2.12 개정)
- ② 전국체전 및 중요한 전국규모대회에서 2, 3위에 입상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
- C급 : ① 전국체전 및 중요한 전국규모대회에서 8강 이상의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자
- ② 각종 실적 및 경력을 감안하여 충분한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2) 기존코치

- A급 : 전국체전 및 중요한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승지도 실적이 있는 자
 - B급 : 전국체전 및 중요한 전국규모대회에서 2, 3위에 입상한 지도 실적이 있는 자
 - C급 : ① 전국체전 및 중요한 전국규모대회에서 8강 이내의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자
 - ② 취약종목 및 팀을 지도하여 현저한 실력향상이 있는 자
3. 신규 또는 기존 코치 중 특별히 지원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대상자 및 금액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금 지급) ①지원금 지급기간은 1년(1월~12월)으로 한다.

②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단을 할 수 있다.

1. 당해연도 전국체전 경기지도실적이 현저히 하락한 자
2. 본도체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3. 지원 중 타 시·도로 전출이 확정된 자는 지원중단 및 지원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.
4. 정당한 사유(국가대표로 국제대회참가, 부상 등) 없이 전국체전에 본도 대표로 소속 선수를 불출전시킬 시 지원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.
5.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미 제출자에 대해서는 지원중단 및 전액 환수 할 수 있다.
6.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중단이 필요하다고 결의 할 때

제9조(지원자 관리) 본회지원 지도자 관리는 소속단체 및 해당 종목단체 책임하에 하고, 변동이 있을시 즉시 본회로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'16.12.23>

부 칙(2018.12.2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